

# 2022년도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분담금 부과 · 징수 공고

「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(제17212호)」 제46조제3항,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“2022년도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적립목표액 및 분만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분담금 및 징수일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. 10. 25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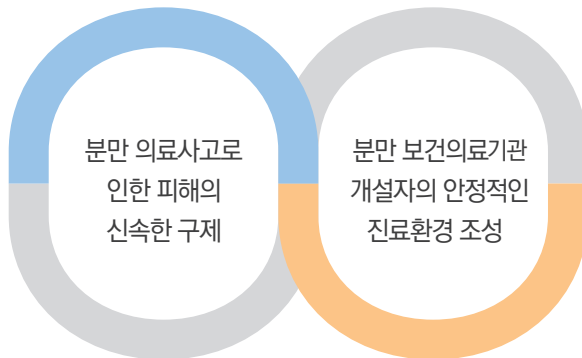
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



## 01.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개요

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, 산모·신생아·태아의 사망, 신생아의 뇌성마비 등 분만(分娩)에 따른 의료사고에 대하여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보상하는 제도

※ 2013. 4. 8.부터 시행



## 02.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대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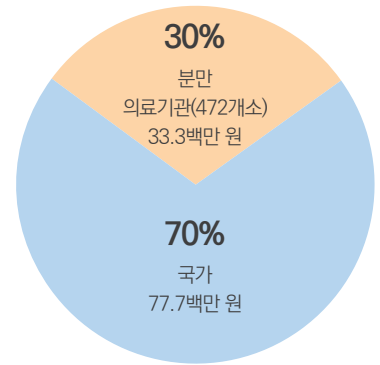
- 분만 과정에서 생긴 신생아의 뇌성마비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신생아의 뇌성마비
- 분만 과정에서의 산모의 사망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산모의 사망
- 분만 과정에서의 태아의 사망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신생아의 사망

### 03. 2022년도 적립목표액 및 부과대상

■ 적립 목표액 : 111백만 원 (국가 77.7백만 원, 분만 보건의료기관개설자 33.3백만 원)

■ 부과대상 : 전국 분만 보건의료기관 472개소\*의 개설자

\*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내에 분만 실적이 있고, 2022년 7월 31일 현재 운영 중인 분만 보건의료기관



[ 2022년도 적립목표액 및 부과대상 ]

단위: 원, %

적립 목표액 (100%)	국가 (70%)	분만 보건의료기관개설자 (30%)	부과대상
111,000,000	77,700,000	33,300,000	472개소의 개설자

### 04. 2022년도 분만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분담금 적립목표액: 33,298,030원

■ 산정기준 : 제도 시행일 이후(2013. 4. 8.일자) 2022년 7월 31일까지 지급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(27억 2천만 원)의 보건의료기관 종별 비율에 따라, 분담금을 분만 보건의료기관 종별 정액 부과

■ 개설자별 분담금

- 상급종합병원 70,690원
- 종합병원 63,190원
- 병원급 109,380원
- 의원 54,660원
- 조산원 10,000원

단위: 원, %

구분	계	상급종합병원	종합병원	병원급	의원	조산원
적립목표액(a×b)	33,298,030 <sup>1)</sup>	3,110,360	5,244,770	13,234,980	11,587,920	120,000
	(100.0)	(9.3)	(15.8)	(39.7)	(34.8)	(0.4)
개설자 수(a)	472	44	83	121	212	12
개설자별 정액 분담금(b)	70,547	70,690	63,190	109,380	54,660	10,000 <sup>2)</sup>

1) 33,300,000원에서 모자라는 1,970원은 개설자별 분담금의 원 단위 절사로 인한 차액임

2) 조산원의 경우 보상금 지급 실적이 없으므로, 최소 분담금 1만원 부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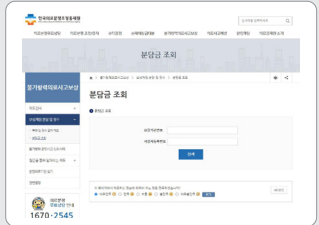
## 05. 2022년도 분담금 공고·안내 및 징수일 등

### ■ 분담금 공고·안내

- 의료중재원 홈페이지 공고(2022. 10. 25.)
  - '22년도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분담금 적립목표액, 분만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분담금 부과·징수 세부내용 공고
- 분만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분담금 안내
  - 개설자별 분담금액, 납부시기 등에 관한 납부고지서 발송
  - 개설자별 분담금액은 의료중재원 인터넷 홈페이지 (www.k-medi.or.kr)에서 상시 조회할 수 있음

**“분만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분담금액은  
의료중재원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.”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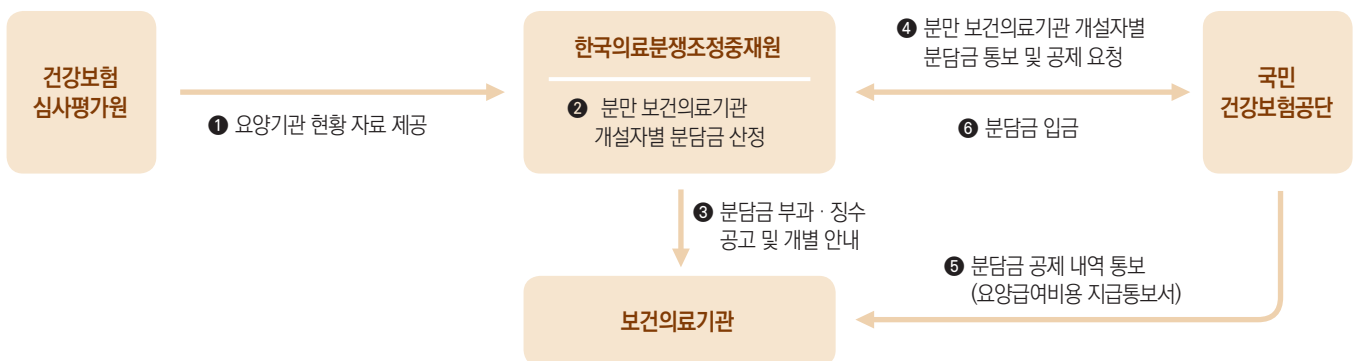
- 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
- 2 「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」(상단) 선택
- 3 「분담금 조회」(좌측) 선택
- 4 요양기관기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



### ■ 징수일 및 방법

- 징수일 : 공고일(2022. 10. 25.) 기준 1개월 후부터 '22.12.31.까지
- 납부 방법 :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의료중재원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납부(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제4항)
  - ※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분만 보건의료기관의 경우 가상계좌 납부 안내

## 06. 2022년 분담금 부과 절차



## 07. 2022년 분담금 부과에 관한 법령

- 「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」 제46조(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)
  - 제3항 : 조정중재원은 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.
- 「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1조(보상재원의 분담비율 등)
  - 제1항 :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(이하 이 조에서 "분담금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담한다.
    1. 국가: 100분의 70
    2.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중 분만(分娩) 실적이 있는 자: 100분의 30
  - 제2항 : 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로 분담해야 할 비용을 산정·부과한다.
  - 제3항 :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비용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 및 징수일을 징수일 1개월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.

## 08. 보상재원의 관리·운용

- 보상재원은 의료중재원의 일반 예산과는 별도로 독립된 계정으로 관리·운영
  - 분만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분담금은 **의료사고 보상금으로만 사용**되며, 그 밖의 보상사업의 운영에 수반되는 경비 등으로는 일절 사용되지 않습니다.
  -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은 **최고 3천만 원의 범위**에서 지급합니다.
  - 분만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연도별 적립목표액 및 산정기준에 따른 분담금만을 납부하며, 보상금을 지급하는 **개별 사례에 대하여** 분만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**별도로 부담하는 금액은 없습니다.**

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에 대해  
**국가와 분만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공동으로 대처함으로써**  
산과(産科)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고,  
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